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国内事件

商標登録無効

<大法院 第2部 判決>(1984. 11. 13)

事件番號 : 83후 67

裁判長 : 김 형 기

關與法官 : 정 태 근 · 이 정 우 · 신 정 철

-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한해수(부산시 중구 광복동 3가 1-3)
-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주식회사 고려당(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307-2)
- 原審決 : 特許廳 1983. 6. 28字, 1981年 抗告審判(當) 第28號 審決
- 主文 :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5. 理由

심판청구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고려당”的 문자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형 도형의 상품에 도자기 도형을 도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자 “정자표 고려당”을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양자에 “고려당”이라는 문자가 공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자의 외관은 상위하다 할 것이고 칭호 및 판념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고려당” 또는 “고려당”이라 쉽게 호칭될 것이나 인용상표는 그 구성부분중 한글자 “정자표 고려당”에 의하여 그대로 “정자표 고려당”이나 또는 그 구성중 “정자표”的 “정자”를 한문자 「精磁」로 이해하고 이를 구성부분 “도자기 도형”과 관련지어 “정교한 도자기”로 연상하여 “정자표(精磁標)” 또는 “자기표(磁標)”라 호칭되거나 판념되어 질 것이라고 보여져 양상표를 전체로 관찰하면 그 외관, 칭호, 판념이 모두 상위하여 거래회사에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별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에서 선출원

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선등록 상표권자의 거래상의 신용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비되는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다른 상표를 선출원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이에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판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판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판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판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판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판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판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두 상표에 의하여 표장되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등이고 인용상표는 “정자표 고려당”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정자표 고려당”이란 칭호 판념이 발생할 것이나 “정자표”와 “고려당”과를 거래상 분리하여 판찰하는 것이 심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간이 신속을 춘중하는 거래의 실체에서는 간략하게 “정자표” 또는 단순히 “고려당”으로 칭호 판념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기 “고려당”이

한 구성부분은 지정상품인 과자류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과자류등의 구매자 등에 있어서의 거래의 실정은 그 제조업체를 주안으로 하여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때 “정자표 고려당”이란 상표 구성에 있어서 “고려당” 부분이 일반 구매자로 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에서 “고려당”이란 칭호 판념이 발생하고 또 이사건 상표의 칭호 판념이 “고려당”임을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두 상표는 그 칭호판념을 같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두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판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案) 英 工業所有權法令集 發刊 案內 (内) ◇—

本會에서는 1981年 5月에 이미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한 바 있으나 그간 審查請求制度와 出願公開制度의 採擇 및 特許協力條約(PCT) 加入등으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法令이 改正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빌어 用語를 좀더 정선하고 現行法令에 부합되도록 改正 補完하는 한편 特許法등 工業所有權基本法外에도 施行令까지 追加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 英文工業所有權法令集을 發刊하였아오니 所要部數를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製作方法 : 4·6倍版 紙質 : 모조
2. 面 數 : 162面
3. 價 格 : 4,000원
4. 問 議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査部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電話 : 557-1077/8